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소홀

기 관 명 서구, 동구, 영도구, 동래구, 북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사상구, 기장군

내 용

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보육사업안내」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, 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¹²⁰⁾ 종료 후 3월 이내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.

120)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(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)에 따른다.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.(시행 2015.12.24.)

그런데 서구 등 12개 구·군은 ‘○○ 어린이집’ 등 37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 ○○○ 등 54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 26,079,632원을 기한 내에 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서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4,323,628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277,42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영도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466,53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래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745,693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

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북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816,539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해운대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251,30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사하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398,48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금정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673,477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강서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3,084,60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연제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171,390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사상구청장은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1,874,276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기장군수는

[시정]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반환한 퇴직적립금 2,996,287원을 회수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